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8조(전문간호사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, 자격 기준, 자격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78조(전문간호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.</p> <p>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</p> <p>2.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</p> <p>③ 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, 자격 기준, 자격 시험, 자격증, 업무 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